

「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11월 23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26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42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8년 11월 2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주민복지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의료급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.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 및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명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안 명칭(제명) 변경
 - 기존 : 「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」
 - 변경 : 「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
- 「의료급여법」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)
 - ‘의료급여법’, ‘의료급여기금’, ‘수급권자’, ‘기금담당관’ 등

-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 인용법령 현행화 (안 제4조)
-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(안 제8조)
 -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상위법령 개정과 변경된 용어 등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,
- 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조례 제명 변경, 조문의 용어변경, 인용법령에 대한 현행화, 「지방재정법」에 의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등이 주요내용입니다.
-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8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
 - 안 제2조에서는 세입과 세출의 구분
 -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회계공무원의 임명과 책임에 관해
 - 안 제5조에서는 수입금 수납, 납입고지 등에 대해
 - 안 제6조에서는 지출에 대해
 - 안 제8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으며,
-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세입과 세출)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)는 의료급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, 의료급여 수급권자(이하 “수급권자”라 한다)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.

제3조(회계공무원의 임명) ①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 제16조에 따른 기금 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,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 한다.

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

을 둘 수 있다.

제4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)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지방회계법」 제4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5조(수입)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, 금액,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.

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출)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,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.

제7조(준용)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

제8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특별회계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

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8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평창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원 부

제 호 년도			
성 명			
주 소			
의료급여금 특별회계	소관		
상환금 내역	대지급금액 원	상환액 원	미납액 원
의료급여금 년 분기분			
납입금액	금	원	
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_____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			
년 월 일			
평창군수 (인)			

납입통지서

제 호 년도			
성 명			
주 소			
의료급여금 특별회계	소관		
상환금 내역	대지급금액 원	상환액 원	미납액 원
의료급여금 년 분기분			
납입금액	금	원	
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_____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			
년 월 일			
평창군수 (인)			

영수필통지서

제 호 년도			
성 명			
주 소			
의료급여금 특별회계	소관		
상환금 내역	대지급금액 원	상환액 원	미납액 원
의료급여금 년 분기분			
납입금액	금	원	
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.			
년 월 일			
평창군수 (인)			

영수증

제 호 년도			
성 명			
주 소			
의료급여금 특별회계	소관		
상환금 내역	대지급금액 원	상환액 원	미납액 원
의료급여금 년 분기분			
납입금액	금	원	
위 금액을 영수함.			
년 월 일			
분임수입원			